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교 안전 조치 근거 마련 〉

■ 김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69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학교 안전 조치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대식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2025. 4. 11.
3. 회부연월일: 2025. 4.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장 등에게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서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에 폭력행위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교장이 당사자들을 분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학교에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학생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초등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당시 사건 발생 나흘 전에 해당 교사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성향과 행동으로 동료 교사들과 몸싸움을 벌여 주변을 긴장시켰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즉각 분리조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참극을 막지 못했음.

또한 학교 방학기간 중에 교육활동 보장과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

교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를 분리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장의 임무에 학교시설의 안전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학교시설의 안전 책임을 교장이 수행해야 할 업무에 추가하고, 교감의 교장 직무 대행 시 업무에도 이를 추가함(안 제20조).

나. 학교의 장은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에 폭력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내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를 분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조치 후 학교의 장은 그 결과를 임명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 및 제27조의3 신설 등).

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방학기간을 포함한 등·하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2조제1항제13호 신설).

Ⅲ. 검토의견

□ 학교 안전 조치 근거 마련

개정안은 학교의 장에게 학교시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의 폭력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교내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방학기간을 포함한 등·하교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학교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의2제2항, 제27조의3, 제32조제1항제13호 등).

현행	개정안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u>민원처리</u> 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 ----- <u>민원처리</u> 및 <u>학교시설의 안전</u> ----- -----.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u>교무</u> 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② ----- <u>교무</u> , <u>민원처리 및 학교시설의 안전</u> <u>을</u> ----- ----- -----.

대행한다.

③ ~ ⑤ (생 략)

법률 제2086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생 략)

<신 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
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
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
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
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

-----.

③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86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
생생활지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은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의 폭력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7조의3에
따른 교내분쟁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교원과 교원 또는
교원과 학생을 분리하는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의 장은 조치 결과를 임명권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학생생활지도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에-----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4항에-----

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교원은 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3항의 긴급 상황의 예방, 대응, 후속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법률 제2086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5(「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신설>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

⑥ -----제4항에-----

-----.

⑦ -----제4항의-----

-----.

법률 제2086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5(「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

-----.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치

3. 제20조의2제4항에-----

3. (생략) <u><신설></u> 제32조(기능) ① (생략) 1. ~ 12. (생략) <u><신설></u> <u>13. · 14.</u> (생략) ③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u>제27조의3(교내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는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의 분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내분쟁심의 위원회를 둔다.</u> <u>② 그 밖에 교내분쟁심의위원 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2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 12. (현행과 같음) <u>13. 등·하교 안전에 관한 사항 (방학기간을 포함한다)</u> <u>14. · 15.</u> (현행 제13호 및 제14 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먼저 개정안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학교시설 안전에 대한 교장의 책임을 규정하고 교감이 교장을 보좌하여 학교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도록 규정함.

이는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의 안전에 대한 교장 및 교감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개정안은 제32조제1항제13호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방학기간을 포함한 등·하교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이는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등·하교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구성원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등·하교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만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함)」에서 학교의 안전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학교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학교의 범위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포함됨.

같은 법은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에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안 제20조제1항에서 학교시설의 안전에 대한 교장의 책임을 규정한 것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같은 법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시행)는 교육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과 교육감이 수립·시행하는 지역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여기에서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등을 의미하는데, 교육활동에는 등·하교가 포함되므로, 개정안 제32조제1항제13호에서 방학기간을 포함한 등·하교 안전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 것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의 안전에 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은, 현행 「학교안전법」의 제정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표 1] 개정안 관련 「학교안전법」 조항

「학교안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u>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u>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u>학교</u>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 <u>유아교육법</u> 」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나. 「 <u>초·중등교육법</u> 」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 <u>초·중등학교</u> ”라 한다) 다. 「 <u>평생교육법</u> 」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 <u>평생교육시설</u> ”이라 한다) 라. 「 <u>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① 교육부장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 <u>교육감</u> ”이라 한다), <u>학교장</u> 및 「 <u>사립학교법</u> 」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이하 “ <u>학교장등</u> ”이라 한다)는 <u>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u>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운영의 기본지침에 관한 사항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비 훈련 등 학교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삭제
5. 학교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학교장은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이하 “학교계획”이라 한다)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매년 해당 연도의 학교계획 및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한편 개정안은 제27조의3에서 교내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제20조의2제2항에서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의 폭력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학교의 장이 교내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 해당 조치에 대한 경비 지원을 규정하고 제20조의5제2호에서 해당 조치를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함.

이는 교원 간, 교원과 학생 간 폭력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조치 권한을 부여하면서, 해당 조치가 학교의 장의 자의적인 판단 등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도록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는 한편, 학교의 장이 조치를 이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만,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교원지위법」 제18조는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는 경우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교원지위법」상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교원과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과의 분쟁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교내분쟁심의위원회에서 교원과 학생 간의 분쟁 등을 심의하는 부분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개정안은 위원회를 학교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을 심의하는 경우 심리적 부담 등으로 교원이 원활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3년 학교에 설치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지역교

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하도록 「교원지위법」이 개정(법률 제19735호, 2023.9.27. 개정, 2024.3.28. 시행)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표 2] 개정안 관련 「교원지위법」 조항

개정 전 「교원지위법」	현행 「교원지위법」 (법률 제19735호, 2023.9.27. 개정, 2024.3.28. 시행)
제19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u>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2. <u>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분쟁 조정</u> 가.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나.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치원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u>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u>학교교권보호위원회</u>”라 한다)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u>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u>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u>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u>시·도교권보호위원회</u>”라 한다)를 둔다. 1. 제1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2. <u>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u>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u>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u>지역교권보호위원회</u>”라 한다)를 둔다.</u>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4. <u>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u> 5.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현행 「교원지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는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가해자로부터의 분리,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가해자로부터의 분리²⁾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과 같이 교원에 대한 분리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공무원법」 등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분리조치 사유·방법·절차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음.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
-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분리조치에 관한 피해교원의 의사를 확인할 것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조치의 기간을 정할 것
 3. 분리조치에 필요한 별도의 공간을 학교 내에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표 3] 분리조치, 업무배제가 포함된 개정안 현황

구분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부일	주요 내용
1	교육공무원법 (제2208225호)	조정훈 의원	2025.2.17./ 2025.2.18.	• 학교의 장은 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 조치하되 긴급한 경우 학교의 장이 우선 직무배제를 하고 임용권자에게 사후 보고 가능(안 제44조의2)
2	교육공무원법 (제2208390호)	김문수 의원	2025.2.24./ 2025.2.25.	• 학교의 장은 교육공무원이 학교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임용권자 보고(안 제44조의3 신설)
3	교육공무원법 (제2208393호)	안상훈 의원	2025.2.24./ 2025.2.25.	•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력 행위 등을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에 대하여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 조치하되 긴급한 경우 학교의 장이 우선 직무배제를 하고 임용권자에게 사후 보고 가능(안 제44조의2)
4	교육공무원법 (제2208645호)	윤상현 의원	2025.3.4./ 2025.3.5.	• 학교의 장은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신상 장애가 있는 교원을 업무배제, 분리조치 가능(안 제44조제2항)
5	대안교육기관법 (제2208531호)	백선희 의원	2025.2.27./ 2025.2.28.	•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이상행동으로 학생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교직원을 학생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 가능(안 제17조의2)
6	사립학교법 (제2208533호)	백선희 의원	2025.2.27./ 2025.2.28.	•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이상행동으로 학생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교직원을 학생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 가능(안 제53조의6)
7	사립학교법 (제2208807호)	김문수 의원	2025.3.11./ 2025.3.12.	• 학교의 장은 교원이 학교 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분리조치 후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고(안 제58조의3 신설)
8	초·중등교육법 (제2208524호)	백선희 의원	2025.2.27./ 2025.2.28.	•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이상행동으로 학생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교직원을 학생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 가능(안 제20조의4)
9	학교폭력예방법 (제2208139호)	강경숙 의원	2025.2.13./ 2025.2.14.	• 학교전담경찰관이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긴급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즉시 경찰서장 또는 교육청에 보고하고 긴급 분리 조치 가능(안 제20조의6)

주: 개정법률안명 - 의안번호 순으로 정렬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학교시설의 안전 책임
○ 교육부: 이견없음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3항(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준수),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 및 제17조(안전점검등에 결과에 따른 조치)에서는 교육시설의 장이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교육시설 안전 관련 업무가 존재하고 있으며, - 실질적으로 학교장의 안전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문의 개정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안 제20조의2제2항) 학교 구성원 간 폭력행위 등 발생 시 당사자 분리
○ 교육부: 일부수정 - 긴급상황 발생 시 학생 안전을 위해 긴급 분리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법제화를 위해 현재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임. - 한편, 학교폭력·아동학대·교육활동 침해 등 학교 구성원 간 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분리 절차는 이미 마련되어 있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대한사립학교장회: 신중검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부분은 위임 범위가 불명확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고, 이로 인해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 - 학교장의 분리조치로 인해 교직사회 위계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고, 학교장이 분리조치 과정 및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대한민국교원조합: 신중검토 - 폭력 사태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학교 및 교육청에서는 경찰 조사, 사법부 판결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행정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함.
(안 제27조의3) 교내분쟁심의위원회 설치
○ 교육부: 신중검토 -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의 성격과 당사자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바, -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노력과 상반될 우려가 있고, 위원회 간 기능의 중첩·중복도 예상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분쟁조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 현행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안별 맞춤형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남도 교육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사립학교장회: 신중검토 - 개정안에 따른 ‘교내분쟁심의위원회’의 역할은 기존 위원회(지역교권보호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교원고충심사제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등)와 역할이 중복됨. - 새로운 위원회 추가로 학교 행정업무가 가중되므로, 운영 중인 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여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안 제32조제1항제13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방학기간을 포함한 등·하교의 안전 사항 추가

○ **교육부: 이견없음**

-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심의사항에 학생의 등·하교 안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안전에 대한 학부모·교사·지역사회 위원의 관심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수용함.
- 다만, 이미 현행 「학교안전법」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을 학운위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으므로, 기존 절차와 통합하여 시행하는 등의 운영이 필요함.

*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6호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학생 안전 내용 포함하여 심의 진행하는 경우 존재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경기도·충청북도·충청남도 교육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사립학교장회: 신중검토**

-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의 안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항 신설은 불필요함.
- 다만, 방학 기간에 학교 교육활동 안전을 보다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면 검토 필요성이 있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하교 안전은 학교 외부 요인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하므로 학교에 단독으로 책임을 부여하기 어려우며, 지자체·경찰 등 유관 주체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방학 중 사고 발생 시 학생의 귀책 사유, 보호자의 관리 책임, 학교의 감독 책임이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학교의 관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자체와 교육청, 보호자의 공동책임 구조 정립 및 예산·인력 확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충청남도교육청).

문 의 처

02)6788-5189